

 기획재정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21. 12. 6.(월) 09:00	배포일시	2021. 12. 6.(월) 08:30
담당과장	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(044-215-4470)	담당자	장준영 사무관 jy4434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윤선영 (044-203-5760)		송수진 사무관 songnice@korea.kr
	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오현진 (042-481-3230)		김학수 사무관 kcsfcd@korea.kr

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- 이행 협상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, 통관애로 개선 등 성과 -

-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*로 수출하는 경우,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.
 - * 아세안(ASEAN) 10개국 :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베트남, 태국
- 또한,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.
- 정부는 '21.9.29. 개최된 「한-아세안 자유무역협정(FTA) 제27차 관세·원산지소위원회」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 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으며,
 - 최근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작성한 최종 합의문을 통해 위와 같은 합의사항을 확정된 바,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※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*로 '07.6. 한-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발효 이후 상호 간의 교역이 2.3배(수출 2.8배, 수입 1.8배) 이상 확대되어 우리나라 전체 수출금액의 17.4% 차지('20년 기준)

* '20년 한국의 주요 교역국(억불): ①중국(2,415), ②ASEAN(1,438), ③미국(1,317)

** 교역 현황: '06년 618억불(수출 321, 수입 297)→ '20년 1,438억불(수출 890, 수입 548)

【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】

-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특혜관세 활용의 어려움을 고려하여,
 -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측의 제안을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으며,
 - 동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.

【통관애로 개선】

-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 - 그간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경미한 형식 오류 또는 기재내용 차이 등을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.

-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,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.

< 통관애로 유형 예시 (붙임 자료 참조) >

* [유형 ②] 원산지증명서 뒷면의 인쇄 오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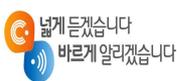
- (사례) 뒷면 미인쇄 또는 단면.반대방향 인쇄 시 특혜관세 적용 거부
- (합의)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

[유형 ⑥] 원산지증명서 정정 발급

- (사례) 정정발급 시 발급번호 변경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
- (합의) 최초 발급번호와 정정 발급번호 차이를 이유로 불인정하지 않기로 합의

□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,

-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하여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연번	유형	세부 논의 내용
1	제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수출국/수입국내 제3자 거래 시, 원산지증명서상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가 기재될 경우 특혜관세 적용 거부 (아세안이 최종 수입자에게 발행된 송장번호 기재 요구) ▪ (합의)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키로 함
2	원산지증명서 뒷면 (Overleaf Notes) 미인쇄, 인쇄면, 인쇄방향 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원산지증명서 뒷면이 미인쇄 되거나, 양면인쇄가 아니거나,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경우 증명서 불인정 ▪ (합의)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키로 함
3	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해당 항목은 임의 기재사항 임에도 ‘양륙항’ 등 일부 정보 미기재 또는 기재내용 오류를 이유로 특혜적용 거부 ▪ (합의) 운송수단·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,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,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☞ 출항일, 선/편명,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
4	발급권자 성명·서명 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양측이 상호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권자의 성명·서명 정보 통보가 지연되어 발급권자 성명·서명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없이 특혜관세 적용 거부 ▪ (합의)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·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함
5	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선적일 등으로부터 3근무일 이후 발급하는 ‘소급발급’ 시 수출국의 관행(초일산입 여부)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국 기준을 적용하여 특혜관세 적용 거부 ☞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전, 선적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. 발급기간 경과 시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소급발급 가능 ▪ (합의) 선적일 산입·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
6	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원본 증명서와 발급번호(Ref No)가 다르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 거부 ▪ (합의)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('19.11.19부터) 이라는 점을 아세안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함
7	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(FOB) 가격 미기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사례) 원산지기준이 세번변경기준임에도 가격 기재를 요구 ▪ (합의)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(RVC)이 아닌 경우, 동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☞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토록 뒷면의 작성안내(Overleaf Note) 6번에 명시